

의안
번호

164

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
지원 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3. 09. 07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양순임 의원 외 13명

나. 의안번호 : 제164호

다. 제출일자 : 2023. 08. 21.

라. 회부일자 : 2023. 08. 31.

2. 제안이유

- 일상생활에서 적절한 신체활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·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구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 수립, 사업 규정(안 제4조)
- 라. 신체활동장려사업(안 제5조)
- 마. 신체활동장려위원회의 구성 등(안 제6조)
- 바. 위탁운영 등(안 제7조)
- 사. 참여자 지원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3. 08. 21. ~ 2023. 08. 26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제정안은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적절한 신체활동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본 제정안은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.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.
- 안 제4조(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 수립)는 신체활동장려 사업의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- 안 제5조(신체활동장려사업)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체활동장려사업 외에 추가로 구청장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.

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서 규정한 장려사업

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6조의3(신체활동장려사업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
2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
3.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·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**안 제6조**(신체활동장려위원회 구성 등)에서는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위원회는 「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」에 따른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하도록 하였는데,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 됨.
- **안 제7조**(위탁운영 등)는 신체활동 장려사업 육성을 위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토록 규정함.
- **안 제8조**(참여자 지원)에서는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확산 및 전파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□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,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생활 속에서 건강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제1항¹⁾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고, 같은 법 제6조제1항²⁾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아울러, 2019.12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일부개정을 통해 ‘2021.12월부터는 지자체가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

1)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(책임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2) 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「 국민건강증진법 」

제16조의2(신체제제3조(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3조(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·시행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.] [시행일 : 2021. 12. 4.]

제16조의3(신체활동장려사업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
2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
3.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[본조신설 2019. 12. 3.] [시행일 : 2021. 12. 4.]

- 참고로, 타 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, 서울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강북구, 구로구, 노원구, 서대문구, 성동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이 외에 광역단체를 포함하여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
「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」 제정 현황

(2023. 09. 01 현재)

■ 전국: 총 18개 자치단체

자 치 단 체 명	비고
서울특별시, 강북구, 노원구, 성동구, 구로구, 서대문구, 제주특별자치도, 전라북도, 목포시, 김해시, 거제시, 여주시, 완주군, 광주광역시 남구, 대전광역시 북구, 부산광역시 중구	